

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황주홍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19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8. 7. 3.

발 의 자 : 황주홍 · 권칠승 · 이찬열
김경진 · 천정배 · 조배숙
김중로 · 윤영일 · 조경태
장병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건물에 스프링클러 설비 등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작동하는 소화 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면 초기 진화가 보다 용이하므로 건물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임.

그러나 현행 법령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,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제곱미터 이상인 요양병원 등 건물 층수 또는 바닥 면적을 기준으로 비교적 규모가 큰 건물에만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러한 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소규모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가 오히려 대형 화재로 이어지거나 커다란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음. 따라서 건물 용도 및 이용자 성격 등에 따라 초기 진화가 보다 중요한 건물의 경우에는 면적이나 층수와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려운 노인, 아동, 장애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는 그 규모와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9조제2항 신설 등).

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중전의 제2항) 및 제4항(중전의 제3항) 본문 중 “제1항”을 각각 “제1항 및 제2항”으로 한다.

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스프링클러 설비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

1. 노유자(老幼者)시설

2.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

제10조의2제2항 중 “제9조제1항 전단”을 “제9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화재안전기준이”를 “화재안전기준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이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노유자(老幼者)시설”을 “노유자시설”로, “대통령령으로”를 “스프링클러 설비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”로 한다.

제47조의2제1항제2호 중 “제9조제2항”을 “제9조제3항”으로 한다.

제47조의3제1항제1호 중 “제9조제1항”을 “제9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제9조제3항”을 “제9조제4항”으로 한다.

제48조제1항 중 “제9조제3항”을 “제9조제4항”으로 한다.

제48조의2제1호 중 “제9조제2항”을 “제9조제3항”으로 한다.

제53조제1항제1호 중 “제9조제1항 전단”을 “제9조제1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노유자시설·요양병원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 설비에 관한 경과 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한 노유자시설 또는 요양병원의 관계인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9조(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·관리 등) ① (생략) <u><신설></u>	제9조(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·관리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스프링클러 설비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 1. 노유자(老幼者)시설 2.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 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③ ----- -제1항 및 제2항----- -----제1항 및 제2항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④ ----- -제1항 및 제2항-----
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이 제1항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·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	
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유	

지·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(잠금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소방시설의 점검·정비를 위한 폐쇄·차단은 할 수 있다.

제10조의2(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유지·관리 등) ① (생략)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공자가 화재위험작업 현장에 소방시설 중 임시소방시설과 기능 및 성능이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유지·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·관리한 것으로 본다.

③·④ (생략)

제11조(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별례)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

-----.

-----.

제10조의2(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유지·관리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제9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-----

-----.

③·④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별례) ① -----

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
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
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
 (건축물의 신축·개축·재축·이전
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
 물을 포함한다)의 소방시설에
 대하여는 변경 전의 대통령령
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.
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
 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의 경우
 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
 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
 을 적용한다.

1. 2. (생략)

3. 노유자(老幼者)시설, 의료시
 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
 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 것

② ~ ⑤ (생략)

제47조의2(조치명령 등의 기간연
 장)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조
 치명령·선임명령 또는 이행명
 령(이하 “조치명령 등”이라 한
 다)을 받은 관계인 등은 천재
 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

-----화재안전기준
 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화재
안전기준-----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노유자시설-----
 -----스프링클러 설비와 그
밖에 대통령령으로-----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47조의2(조치명령 등의 기간연
 장) ① -----

로 정하는 사유로 조치명령 등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 등을 명령한 소방청장,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명령 등을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.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략) 2. 제9조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에 대한 조치명령 3. ~ 8. (생략) ②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 2. 제9조제3항----- ----- 3. ~ 8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제47조의3(신고포상금의 지급) ① 누구든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할 수 있다. 1.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·관리한 자 2.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쇄·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3. (생략) ②·③ (생략)	제47조의3(신고포상금의 지급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제9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----- ----- 2. 제9조제4항----- ----- 3. (현행과 같음) 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48조(벌칙) ① 제9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에 폐쇄·	제48조(벌칙) ① 제9조제4항----- -----

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② (생 략) 제48조의2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1. 제5조제1항·제2항, 제9조제2항, 제10조제2항, 제10조의2제3항, 제12조제2항, 제20조제12항, 제20조제13항, 제36조제7항 또는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. ~ 7. (생 략) 제53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1. 제9조제1항 전단의 화재안전 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·관리한 자 2. (생 략) ②·③ (생 략)	----- 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 제48조의2(벌칙) ----- ----- -----. 1. -----제9조제3항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2. ~ 7. (현행과 같음) 제53조(과태료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 1. 제9조제1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----- ----- ----- 2. (현행과 같음) ②·③ (현행과 같음)
--	---